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37
----------	-------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 의 자 : 김기표 · 송재봉 · 김남희
추미애 · 서영교 · 권칠승
맹성규 · 한민수 · 이주희
이연희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공급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경감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1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5,246명으로, 이는 지난 2024년 11월 기준 24,668명에서 10,578명 증가한 수치임.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
까지로 3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6조의
4).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을 위한 감면) 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 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 사기피해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 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u>2026년 12월 31일</u> 까지 취 득세를 감면한다.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을 위한 감면) ① ----- ----- ----- ----- ----- ----- ----- ----- ----- <u>2029년 12월 31일</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 허세를 <u>2026년 12월 31일</u> 까지 면제한다.	③ ----- ----- ----- ----- <u>2029년 12월 31일</u> ----- -----.
④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	④ ----- ----- -----

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 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 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6년</u> <u>12월 31일</u>까지 경감한다.	----- ----- ----- ----- -----<u>2029년</u> <u>12월 31일</u>-----.
---	---